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401호
- 나. 제안자 : 정재웅 의원 외 9명
- 다. 제출일자 : 2019년 2월 1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2월 7일

2. 제안이유

- 정부에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금융전문 인력 양성 및 해외 금융인력유치를 위해 관련법령에 금융전문인력 양성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과생 특화 금융중심지인 부산도 최근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금융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등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하지만, 「서울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에 담도록 규정(조례 제3조 2항)하고만 있을 뿐,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예산 지원의 근거규정은 부재하여 금융중심지 활성화 및 글로벌 금융혁신 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곤란한 실정임.

- 또한, 현재 국내·외국계 금융기업이 서울 금융중심지에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금융기업이 서울 진출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 임시사무소를 개설 할 경우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서울 금융중심지에 국내 금융기관이 창업하거나, 외국계 금융기관이 지역본부, 지점을 이전 또는 신설을 위해 임시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금융중심지 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기관의 서울 진출을 위한 사전조사단계에서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글로벌 금융혁신 인력양성과 서울 진출 금융기업 유치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 범위를 임시사무소 설치까지 확대함(안 제4조제3항)
-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양성기기관 지정 및 교육·훈련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 금융중심지로 금융기업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에 '임시사무소'를 추가하고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임시사무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안 제4조)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는 금융기관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2015년에 제정되었음.
- 이 조례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¹⁾에게는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제5조), ▷ 신규고용자금(제6조), ▷ 교육훈련자금(제7조)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기업	(주)쿼터백자산운용	(주)쿼터백자산운용	(주)교보플래닛생명보험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주)라살자산운용	(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
		(주)트리니티자산운용	(주)파인밸류자산운용
		(주)밀리니움인마크자산운용	(주)아스트라자산운용

1) 서울시 금융중심지에 국내·외 금융기관이 신규법인을 창업하거나 외국계 금융기관이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이전하는 경우에 2016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주)교보플래닛생명보험 (주)초상증권(한국)	(주)라이노스자산운용 (주)아름드리자산운용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57,926	160,000	239
고용보조금	81,000	36,000	69,000
교육훈련비	449	9,000	-
보조금 합계	139,375	205,000	69,239

-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대상에 서울로 진출 여부를 검토하는 ‘임시 사무소’ 개설까지 추가해 금융중심지의 금융기관 유치를 적극 촉진 하려는 것으로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기관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에서 ‘임시사무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와 조건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지원기준과 한도가 조례 [별표]에 규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임시사무소에 대한 보조금 사항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입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임.

<조례 [별표]> 보조금 지원기준과 한도

항 목	지 원 기 준	지 원 한 도
사 업 용 설 비 설 치 자 금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0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고용 자 금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 자 금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신규고용자금과 교육훈련자금은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해 증원되는 인원(초과 1 명부터)을 대상으로 산정함.

- 또한, 현재 보조금 지원대상을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상시 고용하는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시사무소’의 경우는 10명 이상의 내국인 상시 고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상시 고용 인원을 보다 완화시키는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원(안 제16조)

- 안 제16조는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밖에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금융전문인력의 양성과 해외 금융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개설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평가됨.
- 부산시의 경우에도 2017년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해양·파생특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부산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의 공동학위과정으로 개설해 운영 중에 있음.

담당조사관	연락처
김성만	02) 2180-8055